

#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한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1일  
발 의 자: 한·신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경훈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지향, 김형재, 남창진,  
민병주, 박강산, 박승진,  
박영한, 박춘선, 박철성,  
서상열, 아이수루, 왕정순,  
유만희, 유정희, 윤종복,  
이병도, 이상욱, 이소라,  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 
이효원, 임종국, 정준호,  
최민규, 허·훈, 홍국표  
의원(3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부터 제17조에 따른 다양한 소방관련 활동에는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의용소방대, 사회복지무요원 등 다양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장례지원 대상에는 소방공무원만으로 한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장례지원 대상의 범위를 형평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함 (제명변경)
- 나. 장례지원 대상자를 확대함. (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기본법」, 「소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 
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의용소방대 설  
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병역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소방공무원”을 “소방공무원등”이라 한다.

제1조 중 “소방공무원이”를 “소방공무원 등이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「소방기본법」 제 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순직(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)한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소방공무원등”이라 한다.)으로 한다.

1.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소방항공대 임기제공무원
3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체 인력

4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용소방대원

5. 「병역법」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

제8조 중 “소방공무원의”를 “소방공무원등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</u> <u>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소방공무원이</u>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「<u>소방공무원법</u>」에 따른 <u>소방공무원이</u> 「<u>소방기본법</u>」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소방청장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등</u> <u>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소방공무원 등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「<u>소방기본법</u>」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<u>소방관련 활동 중 순직(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)한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소방공무원등”이라 한다.)</u>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소방공무원법</u>」에 따른 <u>소방공무원</u></li> <li>2. 「<u>지방공무원법</u>」 제25조의</li> </ol>

제8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5에 따른 소방항공대 임기제 공무원

3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

4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용소방대원

5. 「병역법」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

제8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-----  
소방공무원등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